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년월일 : 2021.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세부사항(안 제3조제2항)

라.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마.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법규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 예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별도요청사항 미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인권 영향 평가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 주류 판매금지, 성매매알선 금지 등’ 관련 교육내용 추가요망.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율성에 제한을 가한다는 측면임을 숙지한 행정기관의 시행이 요구됨. 그러므로 업자들이 자율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난예방 및 안전이 주목적으로 보이는데 제4조 교육의 위탁을 협회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목적에 벗어나 보임. 공공기관과 소방서나 경찰 위임으로 한정 하도록 검토바람.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요청사항의 교육내용은 조례 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미반영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의무는 상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미반영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는 교육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미반영
성별 영향 평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는 성별 구분통계를 마련하여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요구도를 파악해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본 법의 취지에 맞춰 해당 조례 또한 교육이수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 연령 등을 고려한 기초통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반영	<p>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4)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노래연습장업자”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의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 영업장의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 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및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강사) ① 교육 강사는 제3조제2항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업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

함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 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홍 지 현